

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8 ~ 7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8. 2. 21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현행 조례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고 비민주적이고 규제적인 의결방식을 개선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연임규정을 수정함(안 제5조)

- 2회에 한하여 연임 ⇒ 1회에 한하여 연임

나. 의결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함(안 제7조제3항)

-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⇒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.

다.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조항을 정비함

(안 제1조, 제2조제3항, 제4조 본문, 제2조제3항제3호, 제4조제3호, 제6조, 제7조제4항)

- 규정에 의한 ⇒ 에 따른
- 각호 ⇒ 각 호
- 기타 ⇒ 그 밖에
- 각호의 1 ⇒ 각 호의 어느 하나
- 때 ⇒ 경우
- 제1항 내지 제3항 ⇒ 제1항부터 제3항까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0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그 밖에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(2) 입법예고(2008.1.24 . ~ 2.12.)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제51조에 따른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로 하고, 같은 조제3항 및 제4조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2조제3항제3호, 제4조제3호 및 제6조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 본문 중 “2회”를 “1회”로 한다.

제6조 본문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같은 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“때”를 “경우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”를 “의결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제4항 중 “제1항 내지 제3항에”를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 제51조에 따른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중 종합민원실장, 재무·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	<p>제2조(구성) ①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각 호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그 밖에 -----</p>
<p>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</p>	<p>제4조(기능) -----각 호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그 밖에 -----</p>
<p>제5조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임기) ----- -----1회-----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위원의 해촉) <u>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.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3.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. <u>기타</u> 위원으로서의 품위등을 손상,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	<p>제6조(위원의 해촉) -----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----- <u>경우</u> 2. ----- ----- <u>경우</u> 3. ----- ----- <u>경우</u> 4. ----- <u>경우</u> 5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<u>경우</u>
<p>제7조(회의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<u>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</u></p> <p>④ <u>제1항 내지 제3항에</u>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	<p>제7조(회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의결한다.</u></p> <p>④ <u>제1항부터 제3항까지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